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10. 15 선고 2021가단598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
담당변호사 김상훈

피 고 1. A
2. B
변 론 종 결 무변론
판 결 선 고 2021. 10. 15.

주 문

1.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소외 C와 피고 A 사이의 2020. 5. 22.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A은 소외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20. 5. 25. 접수 제33600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소외 C와 피고 B 사이의 2020. 4. 22.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는 소외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20. 4. 23. 접수 제26786호로 마친
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소외 C와 피고 B 사이의 2020. 6. 1.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 B는 소외 C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20. 6. 1. 접수 제3587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[청구의 표시]

○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 ○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장구

별지